

1.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되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과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실·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국가보훈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에 6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에 21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3)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

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23조, 제24조, 별표 4부터 별표 19)

국가보훈부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 국립대전현충원에 6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61명, 전문경력관 2명),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에 4명(4급 이하 4명),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에 4명(5급 이하 4명),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6명(4급 이하 6명), 국립영천호국원에 10명(4급 이하 10명), 국립임실호국원에 10명(4급 이하 10명), 국립이천호국원에 9명(4급 이하 9명), 국립산청호국원에 9명(4급 이하 9명), 국립괴산호국원에 10명(4급 이하 10명), 국립제주호국원에 7명(4급 이하 7명),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에 3명(5급 이하 3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24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명, 4급 이하 23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878명(고위공무원단 5명, 4급 이하 873명), 보훈심사위원회에 65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이하 46명, 전문경력관 14명)의 정원을 둔다.

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7조 및 별표 20)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총괄과, 보훈문화콘텐츠과, 현충시

설정책과, 심사기준과 및 보훈의료심의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시운영과
및 연구교육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28조 및 별표 21)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지방보훈청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
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
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3. 4. 00. ~ 4.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보훈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 부 내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및 홍보 회의체의 운영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브리핑 운영·지원
4.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관리
6. 장·차관 대외 메시지의 작성 및 관리
7.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2. 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 및 콘텐츠의 제작·활용
3. 실시간 온라인 이슈 대응체계의 구축·운영
4. 온라인과 연계한 부 내 홍보활동의 기획·운영
5.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혁신행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대통령실 및 국무조정실 등 대외기관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2. 국정과제 및 공약사항의 점검·관리
3. 부 내 현안과제의 총괄·조정
4. 국회 관련 업무보고의 총괄·조정
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예산 편성·집행의 조정 및 결산
8.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조정
9.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2.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4. 행정·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5. 정보공개 관련 업무의 총괄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7.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시행

8.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총괄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정원의 관리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11. 부 내 비정규직 관리 업무의 총괄

12. 소관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14.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 업무의 총괄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보훈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의 총괄

2.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3.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4.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5. 국가보훈부 훈령의 종합·관리

6. 보훈 관련 법제연구 및 그 밖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8.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부 내 비영리법인 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부 내 정보화 기획 및 평가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2.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등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
3.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연구·개발
4.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련 통계의 유지·관리
5. 국가보훈부 소관 행정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6. 정보화 기기 및 정보자원 관련 보급·관리의 총괄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공기관과의 보훈행정 정보화 및 전산업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11. 부 내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영·관리
12.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관리
13. 그 밖에 보훈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

리팀장 각 1명을 두며,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관리 및 지원
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관리 및 지원
4.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관리 및 지원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관리 및 지원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9.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④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

조정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운영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제출한 수익사업 실적 등에 대한 관리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실태조사

제6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보훈정책실) ① 보훈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훈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훈정책관·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며, 보훈정책관·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훈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보훈정책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훈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보훈문화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

항제1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보존정책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보존예우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30호부터 제4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보존정책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존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보존정책실에 보존정책총괄과·국제협력과·보훈문화정책과·보훈문화콘텐츠과·기념사업과·현충시설정책과·현충시설관리과·예우정책과·국립묘지정책과·보훈기록관리과 및 공훈심사과를 둔다.

⑦ 보존정책총괄과장·국제협력과장·보훈문화정책과장·보훈문화콘텐츠과장·기념사업과장·현충시설정책과장·현충시설관리과장·예우정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훈기록관리과장 및 공훈심사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⑧ 보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보존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각종 보존정책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4. 보존정책 비전 및 메시지의 관리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관리
6.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7. 보존정책 및 제도의 분석·관리

8.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 및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9.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10. 보훈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11. 정책·제도 관련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⑨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 업무의 총괄·조정
 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업무협회의 총괄
 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치 및 다
자회의체의 참여·협력
 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수집·분
석 및 국제보훈학술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연구에 관
한 사항
 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현지행사 및 국제추모행사 등 추진에 관
한 사항
 7.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공적의 발굴·포상 및 초청 등 예우·지
원에 관한 사항
 8.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보훈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문화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선양정책의 총괄·조정
2. 보훈문화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
3.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보훈문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기획·조정
5.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집행·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6.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총괄·조정
7. 국가유공자 및 교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8.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9. 보훈문화 체험활동의 운영·지원
10. 친일귀속재산의 관리
11.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1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감독

⑪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2.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3. 보훈문화 진흥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보훈문화콘텐츠 관련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대중문화와 연계한 보훈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디지털·모바일 및 스마트 등 온라인 보훈문화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보훈 상징물의 기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보훈문화콘텐츠 관련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⑫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기획·조정
2.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국내·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3. 보훈선양 관련 정부기념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4. 국외 독립기념행사의 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에 관한 사항
6. 호국보훈의 달 관련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
7.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8.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⑬ 현충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및 활용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2. 현충시설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제도개선
3. 현충시설을 활용한 보훈의식 고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4. 국내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국고보조금 지원·
관리
5. 현충시설 직접건립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현충시설 직접건립 관련 분야별 설계 및 적정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7. 현충시설 직접건립 관련 공사관리의 지원·감독

8. 현충시설 직접건립 시설물 관련 준공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

⑭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3. 백범김구기념관 등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4.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활용에 관한 조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건립지원 및 관리

7. 국외 현충시설 매입, 매입 현충시설의 리모델링 및 운영·관리

8. 현충시설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

10. 독립기념관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⑮ 예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사업의 총괄·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개발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6.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관리
7.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
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⑩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운영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국립묘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국립묘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감독
5. 안장·참배 및 의전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안장자 공훈선양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⑪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상 및 등록을 위한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
리
2.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전기 등 문헌의 발간·보급 및
지원

3. 독립·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학술회의의 개최·지원
 4.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주귀국 지원 및 후손확인위원회의 운영관리
 5.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록의 발간 및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선정·홍보
 6.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8.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계획의 수립·시행
 9.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지원
 10.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관리
 1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및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연구, 편찬 및 자료관리 등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 ⑱ 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립유공자 및 4·19혁명유공자 발굴·포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2. 독립유공자 및 4·19혁명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관리
3. 참전유공자 등의 발굴·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4. 발굴·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선

제9조(보상정책국) ① 보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등록관리과 및 심사기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대상체계의 연구 및 정책의 기획
3.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의 기획
4.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관련 법령의 제·개정
5. 주요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6.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7.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수준의 결정
8. 보훈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9.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선
10.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11. 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의 사망·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지도·감독

12.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등록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조정

2. 등록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선
3.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범위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개발
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기록의 유지·관리
8.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계획의 수립·총괄
10. 국가유공자 등의 국내·외 요건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11.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2. 신고포상금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심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조정
2. 보훈심사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선
3.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감독
4.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에 관한 정책·법령의 입안 및 연구·개발
5. 각종 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지도·감독
6. 주요 신체검사 제도 관련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7.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고엽제후유증·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검진·질
병범위 및 등록 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상이등급 등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1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질의 및 자
문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증진국) ① 복지증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는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증진
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훈의료심의관으로 하며, 보훈의료심의
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보훈의료심의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
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복지증진국장이 명하는 사
항에 관하여 복지증진국장을 보좌한다.

④ 복지증진국에 복지정책과·복지서비스과·보훈의료정책과 및 생
활안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지정책의 총괄·조정
2. 보훈복지 관련 법령의 제·개정

3. 보훈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4. 보훈복지사업의 총괄·조정
 5. 보훈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집행·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운영
 7. 보훈기금 증식사업에 관한 연구
 8.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고궁 등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보훈부 소관 복권기금사업의 선정·관리 및 평가 등의 총괄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그 밖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 사회·심리적 취약계층의 발굴·관리
 1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⑥ 복지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노후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2.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운영·관리
 3. 국가유공자 등의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양육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훈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관리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7. 88관광개발(주)의 운영·관리
 8.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9. 보훈기금 관련 물품의 관리

⑦ 보훈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료정책의 총괄·조정
2. 보훈의료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개선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진료 수준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보훈병원의 운영 및 지도·감독
7. 보훈병원 시설의 건립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훈병원 의료진 수급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의 의학적 재활에 관한 연구·개발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리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에 관한 사항
14. 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계획의 수립·시행
15.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6.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⑧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또는 고용 비율의 설정
3.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실태파악 및 지도·감독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6. 취업지원 제도의 연구·개선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9. 대부원리금의 수납 및 채납채권 처리에 관한 사항
10. 대부위탁 금융기관의 대부실시 및 채권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11.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5. 교육지원 대상자의 보훈 관련 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교육지원 제도의 연구·개선

제11조(제대군인국) ① 제대군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대군인국에 제대군인정책과·제대군인일자리과 및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

③ 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선
3. 제대군인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4.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지원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정책평가·조정 및 홍보
6.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력정보의 관리·활용
7.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관리
8. 제대군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제대군인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2. 부 내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사항의 확인·점검
3.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발굴·추천
4.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업무의 총괄·조정
5. 제대군인 취업촉진 및 지원의 총괄·조정
6. 제대군인 능력연계시스템의 개발·관리
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8. 제대군인 창업지원의 총괄·조정

9.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0. 제대군인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1.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총괄·조정
 12.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1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15.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총괄·조정
 16. 제대군인 의료·대부 및 주택지원 등 사회복지 지원의 총괄·조정
 17.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의 총괄·조정
 18.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 ⑤ 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정부기념행사의 기획·시행 및 지원
 2. 국지 도발 관련 각종 기념행사의 기획·시행 및 지원
 3. 민간 주관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기념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지원 및 관리·감독
 5. 6·25전쟁 참전 등 호국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감독
 6. 재향군인회 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
 7. 창군 및 참전원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에 관한 사항

9. 군작전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대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시행
11. 6·25전쟁영웅의 선정·홍보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제12조(국립대전현충원) ①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의 계획·집행
2. 참배안내
3. 유골·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6. 교육장의 운영·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9. 국립묘지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제13조(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4조(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국립호국원) ① 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산청호국원장, 국립괴산호국원장 및 국립제주호국원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각각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의 각 과장과 국립산청호국원의 관리과장은 각각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국립산청호국원의 현충과장은 행정주사·공업주사·임

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5. 시설·묘역 및 산림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행사의 계획·집행
2. 참배안내
3. 유골·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6. 교육장의 운영·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관리
9. 국립호국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제17조(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제18조(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행정관리과·전시운영과 및 연구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추진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조직·정원의 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국회·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보존 및 기록물의 관리
11. 청사 및 시설의 관리·방호
1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1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설·기획 및 특별 전시계획의 수립·시행
2. 전시실의 운영·관리
3. 전시실의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전시안내 및 전시콘텐츠의 개발·운영
5. 기념관의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6.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관련 단체의 지원
7.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문화사업의 기획·운영
9.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박물관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0. 자원봉사자의 교육·관리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및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3.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4. 소장자료의 대여·복제·복사·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8.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
9.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계획 수립·시행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발굴·고증 및 분석
12.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의 개최
13. 학술·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1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관련 교육시설의 운영·관리
15. 교육 교구 및 교재의 개발·보급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19조(관할구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보훈청이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지방보훈청) ① 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보훈청에 총무과·보훈과·보상과·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며, 총무과장 및 보훈과장은 각각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상과장·복지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의 총괄·조정
2.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지원
3. 기획 및 성과관리
4. 보안·서무·문서·인사·용도·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예산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운영 지원
7.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8. 관내 국립묘지관리소(국립대전현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업무의 지도·확인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선양·예우 및 보훈문화에 관한 사항
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록 및 전기 등의 발간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참전유공단체의 지원 등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5.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8. 보훈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상이·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기록의 작성·유지
4.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안장지원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수행

⑥ 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는 제외한다)
2. 각종 기금 및 기금재산의 관리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훈복지시설의 관리
5.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양육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송시설·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구의 지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노후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2.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에 대한 적성검사, 경력설계 및 진로상담
2. 제대군인 취업 관련 상담, 직종확보, 정보제공 및 일자리 추천
3. 제대군인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5.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구축·운영

6.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지원
7. 제대군인지원센터자문위원단의 운영
8. 제대군인 구직활동 촉진 장려를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9.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10.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
11. 제대군인 사회정착교육에 관한 사항
12.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보훈지청) ① 보훈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보훈지청에 두는 과(제대군인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각 과장 및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로 보한다.

③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상과장은 제20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및 행정심판·소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별표3에 따라 복지과를 두지 않는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⑤ 복지과장은 제20조제6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20조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제22조(보훈심사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 및 심사4과를 두며, 심사1과장 및 심사3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심사2과장 및 심사4과장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접수·발송·통제 및 관리의

총괄

2.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의 총괄·조정
 3. 안건의 접수 및 배정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규정의 제·개정
 5. 전몰·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6.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7. 보상금 등의 결손처분, 반환의무 면제, 보상의 정지 및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 지원
 8.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이 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10.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증인 등에 대한 청문·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운용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④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5항제1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순직·공상군경 등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5항제3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상이등급 6급 이하인 공상군경 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3. 제1호·제2호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4. 제1호·제2호의 안전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증인 등에 대한 청문·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운용 등에 관한 사항

⑤ 심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직·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의 요건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인정여부에 관한 심사 지원

3.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만 해당한다) 및 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전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증인 등에 대한 청문·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운용 등에 관한 사항

⑥ 심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공상이자의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한 심사 지원

2. 상이정도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

성·관리 및 의결서 작성·통지

3. 상이등급 심사 지원을 위한 질병·부상별 사례 분류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따른 안전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증인 등에 대한 청문·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3명(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명(5급 2명,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4명(6급 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대변인, 제대군인국장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을 말한다.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제대군인일자리과장,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및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장 평가대상 조직

제27조(평가대상 조직)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제9장 한시정원

제28조(한시정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30일까지 별표 21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보훈청에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디지털소통팀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 및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이 분장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5의 행정사무관 1명은 2024년 2월 28일까지, 행정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보 1명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제9조제1호 후단, 제9조제2호,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후단,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 후단,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전단,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각각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제2호,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4조제2항제6호,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제2호,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4항, 제4조의2제5항, 제4조의2제6항, 제4조의2제7항, 제5조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3조의3제2항, 제3조의3제3항 전단,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4조제5항 전단,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⑦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제1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의4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단서, 제24조제4항 및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를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제19조제1항 관련)

1. 지방보훈청

명 칭	관할구역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마포구·서대문구·강동구·송파구·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김천시·구미시·경산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청도군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강진군·장흥군·해남군·완도군

2. 보훈지청

지방보훈청	소속 보훈지청	관할구역
서울 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강남구·서초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강북구·노원구
	경기남부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안양시·과천시·안산시·평택시·오산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화성시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광명시·김포시
	경기북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
	경기동부보훈지청	경기도 성남시·하남시·광주시·용인시·안성시·이천시·여주시
	강원서부보훈지청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화천군·양구군·홍천군·인제군·철원군·횡성군
	강원동부보훈지청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정선군·평창군·영월군
부산 지방보훈청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남동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밀양시·거제시·창녕군·의령군·함안군
	경남서부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통영시·남해군·하동군·고성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산청군

대전 지방보훈청	충남서부보훈지청	충청남도 보령시·서산시·당진시·태안군·홍성군·예산군·청양군·서천군
	충남동부보훈지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주시
	충북남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음성군·괴산군·증평군
대구 지방보훈청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문경시·봉화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예천군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영천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광주 지방보훈청	전남동부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보성군·고흥군
	전남서부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광군·진도군·함평군·신안군·영암군
	전북동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무주군
	전북서부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별표 2]

지방보훈청이 조정·통제하는 국립묘지관리소(제19조제2항 관련)

지방보훈청	국립묘지관리소
서울지방보훈청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이천호국원
부산지방보훈청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산청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대전지방보훈청	국립괴산호국원
대구지방보훈청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광주지방보훈청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임실호국원

[별표 3]

보훈지청에 두는 과(제21조제2항 관련)

구 분	과 명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강원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울산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경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충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충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경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경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복지과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전북서부보훈지청	보훈과, 보상과

[별표 4]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337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1
일반직 계	333
고위공무원단	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
행정사무관	35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	25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 주사	53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
행정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시설주사	2
전산주사	4
행정주사보	15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8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
전산주사보	2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 보	20
운전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심사기준 담당)	1

[별표 5]

국가보훈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340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4급 상당(장관정책보좌관)	1
일반직 계	336
고위공무원단	11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2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6
행정사무관	3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43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
전산사무관	4
행정주사	25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임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 주사	53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
행정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비서)	1
시설주사	2
전산주사	4
행정주사보	16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임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8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비서)	1
전산주사보	2
운전주사보	1
행정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4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 보	20
운전서기보	3
사무운영서기보	3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심사기준 담당)	1

[별표 6]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64
일반직 계	6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
위생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2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
운전서기보	3
위생서기보	6
방호서기보	1
전기운영주사보	1
기계운영서기보	1
농림운영서기보	4

전문경력관 나군(영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집례 담당)	1

[별표 7]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별표 8]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4
일반직 계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별표 9]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6
일반직 계	6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

[별표 10]

국립영천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10
일반직 계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

[별표 11]

국립임실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10
일반직 계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

[별표 12]

국립이천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별표 13]

국립산청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9
일반직 계	9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별표 14]

국립괴산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10
일반직 계	1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임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별표 15]

국립제주호국원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행정서기·공업서기·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별표 16]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3
일반직 계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별표 1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24
일반직 계	2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학예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
행정서기·공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학예연구관	2
학예연구사	9

[별표 18]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878
일반직 계	878
고위공무원단	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 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 관	70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4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 보	167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5
행정서기 · 사회복지서기 · 공업서기 ·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209
운전서기	1
방호서기	1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공업서기보 · 시설서기 보 또는 전산서기보	182
기록연구사	5
운전서기보	23
위생서기보	15

방호서기보	13
기계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12

[별표 19]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총계	65
일반직 계	6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행정사무관	10
행정주사	10
행정주사보	19
행정서기보	2
운전서기보	1
전문경력관 다군(등록심사 담당)	14

[별표 20]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7조 관련)

1. 국가보훈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보훈정책실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총괄과	3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3) 보훈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4) 보훈정책실 현충시설정책과	5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5) 보상정책국 심사기준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6) 복지증진국 보훈의료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6년 3월 31일까지

2.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운영과	7명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	2024년 6월 30일까지
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연구교육과	7명 (8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명)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21]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8조 관련)

제28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6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 보	1